



명쾌한 수다

자동차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사망 등 중대한 결과’의 판단기준은 무엇일까요?

〈사건 개요〉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A씨는 B씨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그들을 귀가시켜 주기 위해 다른 동료의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B씨를 그가 사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내려 주고 다시 운전하여 가려던 중, B씨가 차량을 가로막고 “술 한잔 더하자.”며 보닛 위에 올라탔습니다.

A씨는 B씨를 떼어 놓기 위해 차량을 서서히 움직이다가 급제동하였고, 이로 인해 B씨가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하지부전마비 및 인지기능저하 등의 영구장해와 중증 의존 상태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와 그 가족들은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해자인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 사건의 쟁점

- (1)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의 판단 기준

관련 법령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판결

(1)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에 관하여 판례는 『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위 면책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2) 이때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인지 판단하는 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이때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는 단순히 그 결과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의도한 결과와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결과 간의 차이, 가해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3) 판례는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甲이 乙등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그들을 귀가시켜 주기 위해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우선 乙을 그가 사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내려 주었는데, 乙이 가해 차량을 가로막고 “술 한잔 더하자.”며 보닛 위에 올라타자, 甲이 그를 떼어 놓기 위해 가해 차량을 서서히 움직이다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乙이 가해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하지부전마비 및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하는 영구장해와 매일 8시간 개호가 필요한 중증 의존 상태에 처하게 된 사안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의도한 결과와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결과의 차이, 가해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고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甲은 乙이 영구장해와 중증 의존 상태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乙의 손해는 甲의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위 사고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

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정한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결론

(1)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인지를 판단할 때는 의도한 결과와 실제 결과의 차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고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